

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

|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원천징수의무자 | 상 호 | 사업자등록번호 | |
| | 사업장소재지 (전화번호 :) | 원천징수의무자 유형 | [] 중소기업 [] 중견기업 |

2. 감면 적용 대상자 명단

| 성명 | 주민 등록번호 |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가입일 |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종료일 |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| 근로자 유형 | 해지사유 |
|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| | | | | 1. 청년(15세~34세) 2. 그 외 | 1. 납입 기간 충족 2. 회사의 폐업·휴업 3. 법인의 해산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9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제6항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원천징수의무자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방법

- "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"란: 기업이 해당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을 위하여 성과보상기금 가입일 부터 종료일까지 성과보상기금에 부담한 기여금 총액을 적습니다.
- "근로자 유형"란: 청년(15세~34세)에 해당하는 경우는 '1'을 적고, 그 외의 경우는 '2'를 적습니다.
- "해지사유"란: 납입 기간을 충족한 경우 '1'을 적고, 회사의 폐업·휴업인 경우 '2'를 적으며, 법인의 해산인 경우 '3'을 적습니다.
-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 다만, 해당 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및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로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는 납입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 - 가. 2024.12.31. 이전 가입한 경우: 5년
 - 나. 2025.1.1. 이후 가입한 경우: 3년